

工業所有權審判事例

國 內 事 件

商 標 登 錄 無 效

〈大法院 第 1 部 判決〉(1982. 6. 8)

裁 判 長 : 大 法 院 判 事 이 성 렬

關 與 法 官 : // 이 일 규, 진 상 석, 이 회 창

1. 審判請求人(上告人) 정연구 : (서울 江南구 도곡동 282-5)
2. 被審判請求人(被上告人) : 신성통신공업(주)
3. 原審決 : 特許廳 抗告審判所 1981. 5. 30字, 1980年 抗告審判(당) 38호 審決
4. 主 文 : 上告를 棄却한다. 上告訴訟費用은 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.

5. 理 由

① 審判請求人 訴訟代理人的 上告理由 第 1 點을 본다.

記錄에 의하여 原審이 證據로 삼은 을 第 2 號證(事實確認書)와 을 第 4 號證(事實確認願)의 各記載를 살펴보면 이 事件 登錄商標出願日보다 1年 以前인 1976. 7. 1 以後로는 이 事件 引用商標의 商標權者인 請求人 변태엽이 그 引用商標의 指定商品에 관한 營業을 폐지하였다고 認定한 原審措置에 수궁이 가고 그 證據取捨過程에 所論과 같은 經驗則 또는 採證法則違反이나 審理未盡의 危險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論旨는 理由 없다.

② 같은 上告理由 第 2 點을 본다.

商標法 第34條 第1號에 의하면 商標權者가 登錄商標의 指定商品에 대한 營業을 廢止하였을 때에는 商標權은 그날로부터 消滅되는 것으로 規定되어 있는 바 위의 營業의 廢止는 客觀的으로 營業을 廢止한 것을 認識할 수 있는 行爲가 있음을 要하는 것임은 所論과 같으나 반드시 登錄未消申請이 된 때에만 營業의 廢止로 認定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.

上告理由書에 添附된 所論 參考資料 갑 제2호

증의 7 내지 11은 原審決時까지 提出된 바 없는 資料로서 이에 관한 論旨는 事實審에서 提出하지 아니한 證據를 가지고 原審의 證據取捨를 扨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理由 없다.

③ 그러므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敗訴者의 負擔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.

— 參 考 —

抗告審判

1980年 抗告審判(당) 第38號

抗告審判請求人 : 정연구

被抗告審判請求人 : 신성통신공업(주)

主文 : 本件 抗告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.

抗告審判費用은 抗告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.

審 判

1979年 審判 第274號

審判請求人 : 정연구

被審判請求人 : 신성통신공업(주)

위 當事者間의 登錄 第58959號 商標의 無效審判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審決한다.

主文 : 本件 審判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. 審判費用은 審判請求人の 負擔으로 한다.